

---

## Proposition 65 새로운 개정관련 업데이트

---

### □ 개 요

- 1986년 제정된 규제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경고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정보 제공
-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로 제정되어 변경 혹은 폐기가 불가능함
- 현재까지 약 900개의 화학물질이 리스트에 올라있음
  - 김의 경우는 납(lead)성분이 걸려있음
- 최근 5월 11일부터 BPA(Bisphenol A)성분에 대한 경고문구도 시작됨
  - 현재 BPA의 경우는 **응급 규제를 정하여 마켓 내에 판매대 및 계산대에 경고 문구를 부착**해도 되는 것으로 시행 중
  - BPA는 캔 및 병으로 된 식품 및 음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재 응급 규제로 판매대 및 계산대에만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음.

※ BPA관련하여 7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코멘트 기간을 가졌으며 그 후에 경고 문구 방법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. 현재의 응급규제는 현 규제가 새롭게 제정되지 않는 이상 2017년 12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.

### □ 규정 적용 대상

-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
  - 캘리포니아 주 외가 비즈니스 소재지라고 하더라도 **캘리포니아 소비자**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는 모두 해당됨
- ※ 온라인 쇼핑몰일 시에도 캘리포니아로 배송되는 제품에는 proposition 65가 적용
- 직원수 10명 이하의 소기업, 정부기관 등은 면제대상. 하지만 직원수 10명 이하의 제조업체가 직원수 10명을 초과하는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면 규제가 적용

### □ 대응방안

- **소송** : 피소업체가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.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 또한 오래 걸림.
  - 1986년 법 제정 이후 재판을 통해 종결된 사례는 30건 미만

○ **합의** : 법정합의(settlement in court) 방식이 있으며, 양쪽 모두 법원의 합의 사항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합의금이 발생.

※ 2016년 10월 1일부터 법정 외 합의(settlement out of court)는 인정되지 않음

○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의 경우 대응방안

- 제품 공급자(벤더사)와 계약 시 변호인 선임의무 등 손해배상조항을 삽입하여 대비할 수 있음
- 매장입구 등에 부착된 포괄적인 경고문구는 현재 응급규제로 지정된 BPA 외의 화학물질관련 품목에는 효력이 없으며, ‘~ may contain~’ 등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문구는 과일 등 신선제품에만 사용가능하므로 유의해야함

## □ 새로운 개정사항

○ 새로운 합의조건 (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)

- Proposition 65의 합의 조건, 벌금비용,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수료 등이 새롭게 개정됨
  - 2015년 9월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오피스에서 proposition 65에 명시되어있는 민사벌금(civil penalty fund)을 OEHHA(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)가 받는 것을 보장하게 하고 합의의 투명성을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고 진행한 것이었음
  -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
    - 벌금대신의 지불금(“in lieu of penalty”)을 없앴. 지금까지 이 지불금으로 개인 고소인이 OEHHA 대신에 고소인에게 합의금이 갈 수 있도록 행해지는 일들이 많았음
    - 새로운 규제에 의해 prop 65 합의는 민사비용, 배상비, 혹은 변호사비가 아닌 그 외 합의관련 기타금액인 “Additional Settlement Payments”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함
    - 이번 규제는 또한 민사벌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. 최소한 75%가 OEHHA에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함.
- ※ 벌금의 경우 기존에 25%가 주정부(OEHHA)에게 나머지가 소비자 단체였으나 현재는 75%가 주정부, 25%가 변호사 및 소비자 단체가 나누게 됨

- 또한, 법원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합의에 대한 부분을 **법무장관(Attorney General)에게 합의보고서(Settlement Report)를 제출**해야 함.

※ 법정 바깥에서 진행하는 합의(settlement out of court)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와 변호사측에서도 그 이전에 업체들과 합의를 완료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음

## ○ 경고문관련 개정

- 글자크기 : 경고문의 글자크기는 패키징에 적혀있는 **소비자들을 위한 정보의 글자크기랑 비슷**해야 하며 6 포인트보다 작으면 안됨.
- 경고심볼 : 경고에는 **경고심볼**을 넣어야 하며 이는 노란색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있어야 함 (). 심볼은 흑백으로 프린트 할 수도 있고 경고문구 왼쪽에 적어야 함.
- WARNING : 심볼과 **비슷한 사이즈인 대문자로** 적은 **WARNING**이란 단어를 같이 적어야 함.
- 경고문구 : 문구에는 proposition 65에 해당하는 **화학물질 최소 1개**를 기재해야 하고 문구 후에는 식품의 경우에는 “For more information go to [www.P65Warnings.ca.gov/food](http://www.P65Warnings.ca.gov/food)” 라는 문장도 기재해야 함.
- 시행일 : **2018년 8월 30일**  
 ※ 2016년 8월부터 바뀐 개정된 경고문구 및 심볼을 사용할 수 있음.

## □ 시사점

- Proposition 65의 합의관련 규제 개정으로 인해 주정부(OEHHA)로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아졌으나 경고문구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고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음
- 경고문구관련하여 바뀌는 부분이 201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관련하여 잘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
  - 경고문구에 prop 65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

\* 출처 : OEHHA, proposition 65 practice group 및 law office blog